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32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허 영·김문수·임호선

박상혁 • 전재수 • 장철민

윤준병 • 위성곤 • 홍기원

한정애・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3신설 등).

법률 제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 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 유지·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

-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1조제1항제6호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
<u>관리</u>)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	<u>관리 등</u>) <u>①</u>
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	
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u>하고,</u> 국토교통부장관,	<u>한다</u>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	
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	
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
	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 유지・관리가 적합하게

<신 _설>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3(이행장제금) ① 국토교 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소유자 또는 관 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 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 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 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최 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 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 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 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대통령령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
 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7. ~ 9. (생 략)
- ② (생 략)

<u>다.</u>
제41조(과태료) ①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5조의2제1항을</u>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